

## 8. 건설기술관리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0-41호 2000. 2. 11

### 개정사유

공공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CM)'를 활성화하고 환경친화적 건설기술정책의 추진하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안전관리 및 건설 신기술 지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가. 건설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심사항목에 '현장적용성'을 추가하고, '신규성'·'진보성'과 유사한 '유일성' 항목은 삭제하는 등 신기술지정기준을 명확히 함.
- 나.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벌점 부과 및 입찰시 불이익부여를 강제 규정화하고 건축설계 및 감리도부실벌점 부과대상에 포함.
- 다. 무분별한 현장점검을 제한하고 현장점검 실명제를 위하여 건설현장 점검시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을 따르도록 함.
- 라. 공공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CM)'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업무범위 및 대가 등 세부시행규정을 마련함.
- 마.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조직을 일원화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안전관리조직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사.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친화적 건설 등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아.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청이 민간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자. 발주청은 감리자 선정평가지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설비공사에 대하여 총괄하여 감리하는 자를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차. 감리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년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카. 안전관리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택회보